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00
----------	-------

발의연월일 : 2025. 12. 8.

발 의 자 : 김영호 · 김문수 · 권철승
윤종균 · 박홍근 · 이병진
강경숙 · 백승아 · 맹성규
정을호 · 백선희 · 박홍배
박주민 · 박성준 · 김태년
이주희 · 전용기 · 박상혁
박지원 · 김주영 의원
(20인)

제안이유

민간자격의 양적 증가에 따라 민간자격의 부실한 관리·운영, 거짓·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민간자격의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나.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 운영 및 검정과 관련한 서류 등을 비치·관리하여야 하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 3 신설).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갱신은 이 법의 민간자격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 운영 및 검정과 관련한 서류 등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제17조제2항에”를 “제17조제2항·제4항에”로, “등록을”을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로 한다.

제39조제1호의2 중 “제17조제2항에”를 “제17조제2항·제4항에”로, “등

록을”을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등록갱신하지 아니하고
관리·운영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의 유효기간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효기간으로 한다.

1.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민간자격의 유효기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민간자격의 유효기간: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3.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민간자격의 유효기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4.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민간자격의 유효기간: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효기간: 이 법 시행일로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5. 202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등록된 민간자격의
유효기간: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12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②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③ (생략) <u><신설></u>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2항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으로 한다.</u> <u>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u> <u>⑤ 제4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갱신은 이 법의 민간자격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u>⑥ (현행 제3항과 같음)</u> <u>제17조의3(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u> <u>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 운영 및 검정과 관련한 서류 등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u>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① (생략)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① (현행과 같음)

략)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제17조제2항에</u> 따른 <u>등록</u>을 한 경우 2. 3. (생략) ② ③ (생략)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1. (생략)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u>제17조제2항에</u> 따른 <u>등록</u>을 한 자 1의3. (생략) <u><신설></u> 2. ~ 5. (생략)	같음) 1. ----- -----<u>제17조제2항 · 제4항에</u> -----<u>등록 또는 등록갱신을</u> ----- 2. 3.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벌칙) ----- ----- -----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 -----<u>제17조제2항 · 제4항</u> <u>에</u>-----<u>등록 또는 등록갱신을</u> ----- 1의3. (현행과 같음) <u>1의4.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u> <u>민간자격을 등록갱신하지 아</u> <u>니하고 관리 · 운영한 자</u> 2. ~ 5. (현행과 같음)
--	---